

[사 건 명] 행심 2018 - 18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 ◇◇◇은 인천 ○○○○학교가 2017. 11. 17.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심의한 안건 2번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전부위탁운영 선정계획안'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의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7. 12. 1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7. 제 6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 12. 28. 피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5. 경 7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4. 12. 경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2018학년도 방과후 학교 전부위탁운영 선정계약(안)’은 원안 가결이 되어 의사결정 과정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안전자료이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만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이 사건 정보를 참조하라고 한 것은 운영위원들이 회의과정 중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고할 자료를 살펴보라는 내용이고, 학교의 구성주체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의사결정중인 안전을 공개하여 학교의 운영주체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의 의견이 개입된다면 오히려 학교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처분 근거 법령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호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 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제 1항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호는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는 2017. 11. 17. 제5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2.로서 2018학년도 방과후 학교 전부위탁운영업체 선정 계획(안)을 상정하여 이 사건 정보를 참고로 하여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계획을 결정하였다.

나. ○○○○학교는 2017. 12. 27. 경 제6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5. 로서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방법 심의(안)을 상정하여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학교는 2018. 1. 5. 경 제7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안을 상정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학교는 2018. 2. 경까지 2018학년도 방과후 학교 전부위탁업체를 입찰 공고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5. 18. 청구인에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통지서'를 송부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2018학년도 방과후 학교 전부위탁운영 선정계약(안)' 은 원안 가결이 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

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안전자료이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만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심의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보장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의 확보라는 측면과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는 2018학년 방과후학교에 대한 전부위탁업체에 대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이 사건 정보에는 안전인 전부위탁업체 선정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참고자료 이외에 구체적인 방과후 학교 업체선정에 관한 평가위원의 구성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입찰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누구나 알수 있어 앞으로의 입찰계약의 공정한 수행에 대하여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지만,

피청구인이 2018학년도 방과후 학교 전부위탁업체선정을 완료한 후에 2018. 5. 18. 경 청구인에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정보를 회의의 투명성에 비추어 공개하여도 상관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방과후학교의 위탁업체 입찰계약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가 되어도 더 이상 업무수행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보장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V.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